

<붙임 2>

2013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방안

2014. 1.

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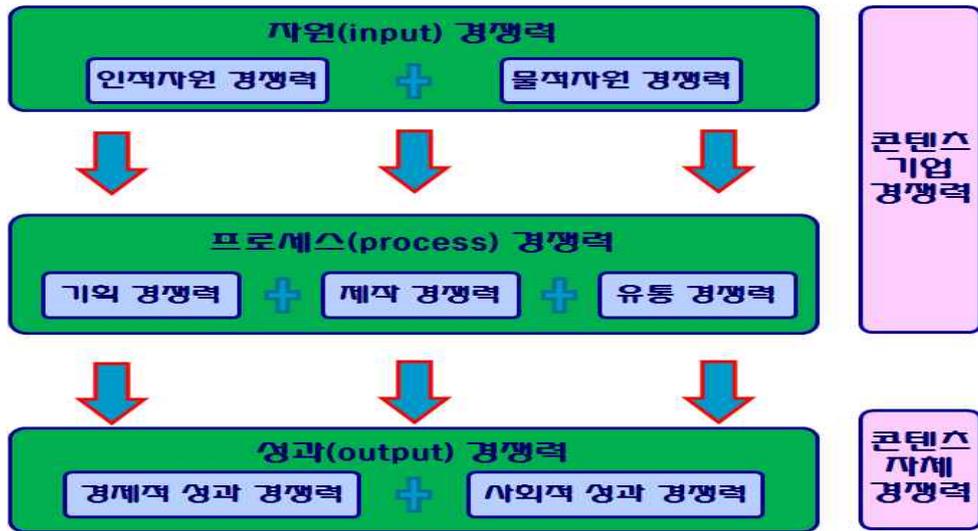
□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의 목적

-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를 정부의 방송콘텐츠 분야 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정부 지원사업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증진
- 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제작역량에 대한 현실 인식과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제작역량 제고를 위한 동기를 부여

□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개념 및 구성요인

-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방송사업자가 방송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에 투입하는 자원과 프로세스의 경쟁력 및 콘텐츠를 통한 사회·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역량
-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은 자원 경쟁력(인적자원, 물적자원), 프로세스 경쟁력(기획, 제작, 유통), 성과 경쟁력(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으로 구성
 - (자원 경쟁력) 방송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과정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경쟁력으로 인적자원 경쟁력, 물적자원 경쟁력으로 구성
 - (프로세스 경쟁력) 방송콘텐츠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경쟁력으로 기획 경쟁력, 제작 경쟁력, 유통 경쟁력으로 구성
 - (성과 경쟁력) 방송콘텐츠를 통해 창출한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경쟁력으로 경제적성과 경쟁력, 사회적 성과 경쟁력으로 구성

[그림 1]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구성요인



*기획경쟁력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항목이라 판단되어 실제 평가에서는 제외

2 '1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방안

□ 평가대상 사업자 범위

- 국내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을 주된 사업분야로 하는 등록대상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
 - 방송법 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승인 대상 방송채널(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 홈쇼핑채널)를 제외한 등록대상 실시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 승인대상 방송채널(종합편성채널, 보도 전문채널, 홈쇼핑채널)을 제외한 등록대상 실시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 ※ 라디오와 데이터 방송콘텐츠는 영상이 아닌 음성, 부호, 데이터의 형태로 제작되는 콘텐츠로 영상, 음성, 부호,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텔레비전 방송콘텐츠와는 경쟁력 요소가 상이하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주문형 방송콘텐츠 사업은 방송콘텐츠를 직접 기획, 제작하기보다는 기 생산된 콘텐츠를 2차 시장에서 유통하는 것으로 경쟁력 요소 및 시장의 차별성 등 실시간 방송콘텐츠 사업과 상이한 요소가 많아 평가대상에서 제외

※ 동일법인으로서 허가 승인 방송사업과 등록PP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EBS, 스카이라이프, CBS, 평화방송, 불교방송, YTN 등), 법인자료를 분리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해당 PP는 제외

□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면서도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평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 14개 평가항목 구성
 - 사업자의 자료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방통위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기 제출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
- 총 6개 콘텐츠 제작역량 세부 구성요인에 따라 총 14개 평가항목을 구성

<표 3> 구성요인별 평가항목

구성요인	세부 구성요인	평가항목
자원 경쟁력	인적자원 경쟁력	①콘텐츠 인력 전문성, ②콘텐츠 인력 계발 ③콘텐츠 인력 보상
	물적자원 경쟁력	④자기 자본, ⑤제작비, ⑥콘텐츠 지적재산권
프로세스 경쟁력	제작 경쟁력	⑦신규 콘텐츠 제작, ⑧신기술 콘텐츠 제작
	유통 경쟁력	⑨국내시장 유통 역량, ⑩해외시장 유통 역량
성과 경쟁력	경제적 성과 경쟁력	⑪국내 시장 수익성, ⑫해외 시장 수익성
	사회적 성과 경쟁력	⑬콘텐츠 내용 심의규정 준수여부, ⑭콘텐츠 수상실적 평가

※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척도와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은 <붙임> 참조

- ① 콘텐츠 인력 전문성: 전체 정규직 종사자 대비 콘텐츠 전문인력 비율 평가
- ② 콘텐츠 인력 계발: 총 영업비용 대비 콘텐츠 직무관련 교육비 비중 평가
- ③ 콘텐츠 인력 보상: 총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 평가

- ④ 자기자본: 총 자산 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평가
- ⑤ 제작비: 제작비 총 규모와 총 영업비용 대비 제작비 비중 평가
- ⑥ 콘텐츠 지적재산권: 콘텐츠 지적재산권 보유 평가
- ⑦ 신규 콘텐츠 제작: 연간 총 방송편성시간 중 자체,공동·외주,구매후 제작 콘텐츠의 초방 편성시간 비율 평가
- ⑧ 신기술 콘텐츠 제작: 연간 총 방송편성시간 중 신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콘텐츠의 초방 편성시간 비율 평가
- ⑨ 국내시장 유통 역량: 국내 시장에 판매한 자사제작 방송콘텐츠 총 편수 평가
- ⑩ 해외시장 유통 역량: 국제 방송콘텐츠 견본시 진출 횟수 및 해외시장 콘텐츠 판매 편수 평가
- ⑪ 국내 시장 수익성: 국내시장 방송사업수익 규모와 콘텐츠 인력 1인당 국내시장 방송사업수익 규모 평가
- ⑫ 해외 시장 수익성: 해외시장 방송사업수익 규모와 콘텐츠 인력 1인당 해외시장 방송사업수익 규모 평가
- ⑬ 콘텐츠 내용 심의규정 준수여부: 심의관련 제규정 위반 건수 평가
- ⑭ 콘텐츠 수상실적 평가: 국내외 각종 콘텐츠 관련 수상 건수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

- **1,000점** 만점에 경쟁력 요인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프로세스 경쟁력(400점)**, **자원 경쟁력(350점)**, **성과 경쟁력(250점)**으로 배분

<표 6> 201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항목 및 배점

구성요인	세부요인	세부 평가항목(14개)	세부 평가 지표(19개)	배점	점수산정	
자원 경쟁력 (350)	인적 자원 (100)	인력 전문성	콘텐츠 전문인력 비중	50	전문인력 ÷ 전체인력	
		인력 개발	콘텐츠 직무관련 교육비	25	교육비 ÷ 영업비용	
		인력 보상	콘텐츠 인력 인건비	25	인건비 ÷ 영업비용	
	물적 자원 (250)	자기자본	자기자본 비중	50	자본총계 ÷ 자산총계	
		제작비	제작비 규모	75	제작비	
			제작비 비중	75	제작비 ÷ 영업비용	
		콘텐츠 지적재산권	콘텐츠 저작권 보유	50	평가대상 기간에 획득한 방송콘텐츠 권리가 있는 모든 방송콘텐츠의 방송시간량	
프로세스 경쟁력 (400)	제작 (350)	신규 콘텐츠 제작	자체, 공동/외주제작, 구매 후 제작 콘텐츠	300	[자체제작 편성시간(X5) + 공동/외주편성시간(X3) + 구매후제작편성시간] ÷ 전체시간	
		신기술 콘텐츠 제작	신기술 콘텐츠	50	신기술편성시간 ÷ 전체시간	
	유통 (50)	국내시장 유통 역량	국내시장 판매량	30	국내시장 판매편수	
		해외시장 유통 역량	해외 견본시 진출	10	해외견본시 출품 회수	
			해외시장 판매량	10	해외시장 판매편수	
		성과 경쟁력 (250)	경제적 성과 (150)	국내시장 방송사업 수익	방송사업수익 규모	50
콘텐츠 인력 1인당 방송사업수익 규모	50				국내방송사업수익 ÷ 콘텐츠인력	
해외시장 방송사업 수익	방송사업수익 규모			25	해외방송사업수익	
	콘텐츠인력 1인당 방송사업수익 규모			25	해외방송사업수익 ÷ 콘텐츠인력	
사회적 성과 (100)	콘텐츠 내용 심의규정 준수여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여부	50	50 - 제재점수	
	콘텐츠 수상실적		콘텐츠 수상실적	50	수상 점수	
총계				1,000		

□ 평가 등급

- 매우우수(15%), 우수(25%), 보통(35%), 미흡(20%), 매우미흡(5%) 등 5개 등급으로 평가

□ 평가 단위 및 자료제출 방식

-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은 채널 단위로, 평가결과는 채널 단위 및 법인 단위 방송사업자로 산출
 - 개별 평가항목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자료는 채널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복수의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단위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단위의 자료를 해당 채널의 자료로 대체
 - 복수의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채널별 결과점수와 법인단위 결과점수(채널 평균)를 동시에 산출

□ 평가 실시

- (평가대상 기간) 201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함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평가대상 기간' 준용)
- (수행기관) 외부의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평가지원단이 되어 평가수행

□ 결과 공개

- 기존에 공개한 전체 매우우수, 우수 등급 외에 3대 경쟁력 요인별(자원 경쟁력, 프로세스경쟁력, 성과경쟁력) 매우우수, 우수 등급을 추가 공개